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그간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, 주 또는 월 단위인 경우로서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시간을 인정토록 개선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2제1항제2호를 제4호로 개정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(週)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

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시간

$(\text{소정근로시간} + \text{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}) \div 48\text{시간} \times 8\text{시간}$

3.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(月)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

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시간

$(\text{소정근로시간} + \text{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}) \div 209\text{시간} \times 8\text{시간}$

4. 소정근로시간이 주(週)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

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1조의2(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)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(이하 “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”이라 한다)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91조의2(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<u>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(週)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[주 소정근로시간+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] ÷ 48시간 × 8시간</u>
<u><신 설></u>	3. <u>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(月)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[월 소정근로시간+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] ÷ 209시간 × 8시간</u>
2.. <u>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(週) 또는 월(月)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</u>	4. <u>소정근로시간이 주(週)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.</u>

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
간. 다만, 소정근로시간이 주
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
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
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
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
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